

#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평남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786
----------	-----

발의년월일 : 2019년 7월 24일

발 의 자 : 김평남 의원 (1명)

찬 성 자 : 김제리, 김화숙, 최기찬,  
문병훈, 최웅식, 권영희,  
김정태, 김 경, 강동길,  
이호대, 강대호, 신정호,  
이병도, 이승미, 박순규,  
노식래, 전석기  
의원 (17명)

## 1. 제안이유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는 만19세 이상으로 서울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형평성 측면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활성화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 판단되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을 불특정 다수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을 불특정 다수로 확대함. (안 제3조 1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2호)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1항 중 “신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을 “누구든  
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신고방법)① <u>신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u>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p>	<p>제3조 (신고방법) ① <u>누구든지</u> ----- ----- ----- ----- -----.</p>

#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신고 방법)제1항을 ‘신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에서 ‘누구든지’ 로 개정함에 따라 신고건수 증가 및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 비용 증가할 수 있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가. 조례안 개정에 따른 신고 건수 증가 및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 비용 증가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기술적 추계 곤란

## 나. 상세 현황 및 사유

-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2017년 1월28일부터 시행, 2017년 5건(총합 250천원), 2018년 1건(총합50천원) 도합 2년간 총 6건(총합 300천원)의 포상금을 조례안 제6조, 제7조(포상금 등의 지급/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함<sup>1)</sup>

1) 제7조(포상금 등 지급 기준) ① 포상금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전통시장 운수리상품권 5만원 2.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 경보형감지기) ② 같은 사람(동일한 주소지 포함)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의 금액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을 최초 신고자로 본다. ④ 2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 조례안 제3조(신고 방법)제1항의 신고자 요건을 ‘누구든지’ 로 개정한다면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비가 현재보다 증가할 개연성 있음
- 그러나 지난 2년간의 포상금 지급 건수가 적고 연도별 차이가 커 신고자 요건 완화에 따른 신고 건수 증가를 예측하기 어려워 포상금 지급 비용 추계 곤란함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석관(주무관)    이수연

☎ 02-2180-7945

e-mail : sooyeon7@seoul.go.kr